

## 2017년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

###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 2.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4.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 고등고시	법원 사무 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등기 사무 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 (TEPS)	지-텔프G- 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	131점	35점	350점	375점	43점 (Level 2)	375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4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 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별도로 안내한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 일정, 등록방법,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2016. 12. 19.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95호 "2017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변경)"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 등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성적을 등록일정에 따라 사전등록하였고, 사전등록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어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성적을 선택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사전등록하여 확인 '완료'된 성적을 끌어와 입력한 경우에는 그 사전등록한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제1차시험 합격자발표 시 등)에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마.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등)에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5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접수기간: 6. 2. ~ 6. 9. (취소마감일 : 6. 12.)	제1차시험	8. 1.(화)	8. 26.(토)	9. 14.(목)
		제2차시험	9. 14.(목)	10. 27.(금)~10. 28.(토)	11. 28.(화)
		인성검사	11. 28.(화)	12. 1.(금)	
		제3차(면접) 시험	11. 28.(화)	12. 8.(금)	12. 15.(금)

- 201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가 도입·시행됩니다.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합격자 발표·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만 공고·게시합니다.